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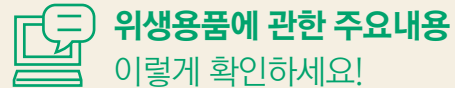
한 눈에 보는 영업자 준수사항

△ : 세척제, 행굼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 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 5개 품목에 해당

이제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합니다.

위생용품 영업자는 법령에서 정한 **영업자 준수사항**을
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
입법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
향후 추가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.



<http://www.mfds.go.kr> > 법령·자료 > 제·개정고시 등



 식품의약품안전처

동홍보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> 법령·자료 > 홍보물 자료 > 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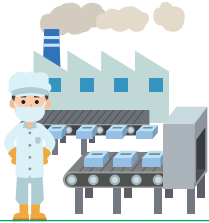
위생용품 안전관리 제도 사전 안내

2018년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안전관리 업무는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며
영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1. 위생용품 제조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**시·군·구청**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**구비서류**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
(제조 중 물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)

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자가품질검사

-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. ※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가능
- 품목제조보고대상: 1회 이상/3개월 • 그 외 위생용품: 1회 이상/6개월

품목제조보고

- 세척제, 행균보조제,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, 일회용기저귀, 일회용 팬티라이너를 제조 할 때에는 **품목제조보고**를 해야 합니다.
-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생산 후 **7일 이내 시·군·구청**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생산실적보고

- 매년 **1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실적**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신규교육** : 4시간 교육 • **보수교육**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‘위생용품’이라는 글자
- 내용량
- 제품명
- 제조연월일
- 업체명 및 소재지
- 원료명 또는 성분명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

※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

2. 위생용품 수입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**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**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**구비서류**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보관창고 임차계약서 (임차한 경우만 해당)

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수입신고 및 검사

- 위생용품 수입 시 **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**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수입신고 후 통관 전 검사를 시행 합니다.
(서류검사, 현장검사, 정밀검사, 무작위표본검사)
- 부적합 시, 반송·반출·폐기 하여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신규교육** : 4시간 교육 • **보수교육**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‘위생용품’이라는 글자
- 내용량
- 제품명
- 제조연월일
- 업체명 및 소재지
- 원료명 또는 성분명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

※ 일부 위생용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다를 수 있음

3. 위생물수건 처리



영업신고

- 시설기준을 갖추고 **시·군·구청**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**구비서류** : 1. 영업신고서, 2. 위생교육 수료증
3.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성적서

※ 상세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향후 제공될 예정

- 신고사항의 변경, 휴업·폐업·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승계를 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

자가품질검사

- 위생물수건은 월 1회 이상(중금속 항목은 6개월에 1회 이상)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합니다.
- ※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 위탁검사 가능

생산실적보고

- 매년 **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생처리 실적**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위생교육

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신규교육** : 4시간 교육 • **보수교육** : 3시간 교육

표시기준

- ‘위생용품’이라는 글자
- 업체명 및 소재지
-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사항